

설고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부담은 나누고 소득은 올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을 나누고 소득을 올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노동부



OO카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 우리 가게에서는
내년에는 아르바이트 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

- OO 카페 사장 -



Take
Out

OO아파트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인데
회사에서 우리 인력을 줄이면 어떻게하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 OO 아파트 경비원 -

설고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걱정, 임금지급 고민은 이제 그만~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설고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 1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예외)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 고소득사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지원 제외



제 2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고용 인력 한 명당 **월 13만원 정액 지원!**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018년 1월 1일 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4대 사회보험공단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1월 오픈

오프라인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등

- 4대 사회보험공단
- 자치단체 주민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서식도 최소한
간소하게 마련했습니다.



제 4장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경감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

고용보험 가입

(단,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 가능)

그래서 마련한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1.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폭 확대
 - 지원대상: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지원수준: 보험료의 60% → 80~90%로 인상
2. 건강보험료 경감
3.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부정수급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